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현정 의원)

의안 번호	149
----------	-----

발의연월일: 2023년 9월 5일

발 의 자 심현정 의원

찬 성 자 김성기, 남진삼, 이창열의원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군 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법 제6조에 따른 군 시행계획(안 제3조)
- 나. 생산자단체와 농산물의 유통·서비스업체의 상생협력사업(안 제4조)
- 다. 직거래 장터의 개설 및 운영(안 제5조)
- 라.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원 및 사후관리(안 제6~8조)
- 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의회(안 제9~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3. 7. 25. ~ 2023. 8. 14.(20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 의견수렴 : 2023. 7. 14.~ 2023. 7. 24. 아래표 참조.

조례안	검토안(농산물유통과)	의회 의견
<p>제2조(정의)</p> <p>2. “직거래 장터”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p>	<p>제2조제2호에 대한 의견</p> <p>- 지역 내의 우리군 농산물 이용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소비자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4호를 <u>추가 반영 필요</u></p>	
<p>제11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 농업 행정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u>소장이 되고</u>,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제11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은 군 농업 행정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u>소장과 농산물 유통의 계획수립·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되고</u>”로 추가하고,</p>	[수용]
<p>제14조(협의회 회의 등)</p> <p>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u>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u></p>	<p>제14조제4항의 “<u>간사는 농산물 유통 관련업무 팀장이 되고, 간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서기를 둘 수 있다.</u>”로 수정 의견 제출함.</p>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농산물”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군 관내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2. “직거래 장터”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

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농산물의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상생협력사업) ① 군수는 군내에 소재한 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서비스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직거래 장터의 개설 및 운영) ① 군수는 농산물 직거래를 위하여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그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거래 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직거래 장터의 이용 홍보
3. 직거래 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에 대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군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정과 관련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원)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소규모 시설 등 환경개선사업
3. 종량제봉투
4.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등 소모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지정받은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를 방문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지역농산물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 농업 행정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소장과 농산물 유통의 계획 수립·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창군의회 의원
2.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4.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5. 그 밖에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 관련업무 팀장이 되고, 간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서기를 둘 수 있다.

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 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실적 등을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시행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그 밖에 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판매자 간의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을 위하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역농산물 품질개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18조(상생협력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등에 속하는 회사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서비스 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산물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중앙협의회를 대표하고, 중앙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

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중앙협의회 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중앙협의회 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산물 유통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중앙협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협의회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부시장 또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③ 지역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

정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협의회”는 “지역협의회”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7조(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원)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소규모 시설 등 환경개선사업
3. 종량제봉투
4.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등 소모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심현정의원
연락처	(033) 330 -2500